

산업안전 Q&A

Q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의 동상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 내 근로자 휴게실 및 호이스트 대기소 앞에 난로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작업전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동상방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토록 하고 있고, 동 별표에서 난방용 시설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 및 간이휴게소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바, 귀 질의는 난로가 겨울철 혹한 등으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간이 휴게소 내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Q

본 공사는 2002년 8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발주처의 요구로 인하여 6개월 공기가 연장되어 준공이 연기된 공사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제1항목인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항목의 사용금액이 항목별 사용기준(40%)을 초과한 상태로 차후 잔여 공기를 감안할 때 인건비 항목 계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년 노동부 공시(제2002-15호) 제2장 제7조(사용기준)의 개정으로 인건비 계상 항목별 사용기준 40%이내에서 60%이내로 사용가능토록 되어있는데 당 공사의 특성상 감리자의 인정하에 적용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2002. 7. 22 개정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항목은 공사감독자(감리자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인정한 경우 최대 60% 이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내 안전관련 서류 중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할 서류와 보관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하고, 기계기구 등의 자체검사 서류는 2년간 반드시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기계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작업) 도급인인 사업주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별도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급 대상 작업이 전체 작업과 별도로 인체에 해로운 작업이 없다면 도급사업주가 도급 작업을 포함하여 전체 작업장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수급인은 수급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하는 각종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근재보험 등)은 피재 근로자나 이직 근로자에 대한 사후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중인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